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조항 삭제〉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69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2
1.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 제한 조항 삭제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5. 27.

다. 회부연월일 : 2026. 5. 28.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을 위하여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공공 행정망 장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애 발생 시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대형 사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인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공공 행정망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Ⅲ. 검토의견

1.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조항 삭제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유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을 발주하였는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48조제3항제1호).
- 국가기관등의 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8조제4항 삭제).
-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국방·외교 등 관련 사업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고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하도록 하던 것을 과기정통부장관이 예외사업 인정여부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요청받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② (생략)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 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 ----- ----- ----- -----.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 ----- ----- <u>의뢰하여 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u>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u> <u>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④ ----- 제3항제2호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 <후단 삭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평가를 거쳐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현행	개정안
	<u>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한</u> <u>한,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u> <u>외사업의 범위, 인정 절차 등에</u> <u>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u> <u>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u> <u>시한다.</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 규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8조는 국가기관등¹⁾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²⁾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한 일정한 진입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1)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한다)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 일정한 사업금액 미만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³⁾의 참여를 제한하고⁴⁾(제2항),
-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⁵⁾에 속하는 대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한하며(제4항 본문),
-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대기업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⁶⁾(제3항 및 제4항 단서),
- 국가기관등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그 사유를 평가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청하도록 함⁷⁾(제5항).

○ 동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제3조 및

-
- 3) 현행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의미함.
- 4)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
- 5) **상출제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산총액이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을 가리킴.
- 6)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
- 7)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1]의 규정에서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기업별 참여 가능 범위를 나누고 있음.

- 20억원 미만 사업에는 ‘중소기업간 경쟁사업 구간’으로서 연매출 1천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고,
- 20억원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에는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⁸⁾이 참여할 수 있으며,
-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에는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연매출 8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 80억원 이상의 사업에는 중소기업과 초기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음.
-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를 금지하되, 과기정통부장관의 예외심의를 거쳐 예외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음.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에 따른 기업규모별 참여 가능 사업>

구 분		참여 가능한 공공SW 사업	기업 수 (‘25년말)	비율
중소기업	중소기업(연매출 1천억원 이하)	모든 사업	17,681	98.2%
대기업	초기중견기업(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	20억원 이상 사업	87	0.5%
	중견기업(연매출 8천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사업	172	1.0%
	중견기업(연매출 8천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사업	10	0.1%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자산총액이 GDP의 0.5%(약11.6조원) 이상)	모든 사업 참여 금지 (단 예외인정 받은 경우만 가능)	62	0.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초기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조건을 벗어나고 중견기업 기준을 만족시킨 지 5년 이내의 중견기업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은 공공소프트웨어시장에서 대기업 선호로 인한 점유율 집중과 하도급 구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2012년 법률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는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한 예외를 두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 그러나, 2023년 11월 국가행정망 전산마비를 계기로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대두되었고, 최근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논의가 재점화되었음⁹⁾.
- 이에 개정안은 대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를 정비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강화된 규제를 규정하는 제48조제4항을 삭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대기업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없애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예외적인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역량 있는 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최적의 시장환경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9) 박진영, “[단독] 국정자원 화재로 13년만에 공공 SW 대기업참여제한 완화 재추진”, 아주경제, 2026.03.03.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이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제48조제3항제2호)¹⁰⁾,

동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1조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경우(제1호),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에 분포된 경우(제2호) 등을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0)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사업 인정을 받는다면 국가행정망 등 대규모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구조임.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1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6조부터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해외진출 실적이 있거나 정부간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진출이 유망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 및 해외사업 위험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경우(해외진출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 한한다)
6.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실제로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는 규모는 2023년 3,234억원에서 2025년 6,294억원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사업 규모>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사업금액(억원)	6,521	4,251	3,234	5,027	6,29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만, 현행법이 원칙적 참여 제한과 예외적 허용 체계를 취함에 따라 예외심의 통과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을 발생시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유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과 같이 처음부터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할 경우 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보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려던 현행법의 취지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원칙적 참여 제한을 해제하는 제도 변경으로 공공소프트웨어의 질을 담보하여야 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48조제3항제1호는 대기업 참여제한의 예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발주하여 유찰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였으나 유찰된 경우만을 규정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

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주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방 분야 사업이 누락되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러나, 법률에서 하위법령의 규정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¹¹⁾ 단서에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달시스템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4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의 예외사업 인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과기정통부장관은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며, 부적절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외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적 결정 권한의 소재가 다소 불명확하였던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사전에 요청받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권한 및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행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예외사업 인정 절차¹²⁾와 법률 규정을 일치시켜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넷째, 안 제48조제6항은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1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①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한다)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11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11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법령 및 이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대기업이 주계약자로 수행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기업이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를 받은 날을 제1항의 요청일로 본다.
- ③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사업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통지 횟수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요청할 수 있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계약정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사업 인정여부의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의 범위,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현행법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48조제2항) 및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의 범위(제48조제3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개별적인 위임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¹³⁾ 위임사항 중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개정안의 위임 근거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3)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최적 사업자를 구성·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 참여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발주·유찰사업’을 추가하여 국방분야에서의 현실을 반영하며, 예외사업 인정 절차 및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